

[일련번호 : 23]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○○동

내 용

1. 업무개요

○○동은 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해설집」 등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해설집」 (행정안전부령 제 381호)제2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는 경우 집행내용에 따라 기관운영 성격인지 시책추진 성격인지 판단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를 구분하여야 하고,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사업부서에서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이므로 단순히 자치단체 내부공무원에게만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, 각종 회의·간담회·행사 등 시책사업과 관련 없는 단순 내부직원 격려를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. 따라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할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이 시책추진 성격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○○동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시책사업과 관련이 없는 직원 송년회 명목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.

[표] 부적정 집행 내역

연번	사용일시	세부사업	건명	지출금액(원)	비고
1	2024-12-18	주민만족의 동행정 지원	2024년 ○○동 송년행사비 지출	206,000	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○○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○○동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, 업무추진비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